일련번호 17-033

기부금 영수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김 수 연

주민등록번호

761001-2178319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2길 60-30 세양청마루@ 106동 101호

② 기부금 단체

단체 명

한국불교태고종 천중사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209-82-62706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214(정릉동)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기부내용

유 형	코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11 0	<u> </u>			품명	수량	단가	
종교단체	41	금전	17.01.01~ 17.12.31				1,000,000
							이하여백
						합계	1,000,000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 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31

신청인

김 수 연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12월

319

2017년 12월

기부금 수령인

한국불교태고종 천중사 주지(서명

작성 방법

-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 1항)
- 2. ❸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3. 4)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3.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 : 209-82-62706

단 체 명: 한국불교태고종천중사

대표자 성 명 : 이규범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420320-100081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26-3

대표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26-3 11/4

교부 사유: 신규

(유의사항)

-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4 년 03 월 18 일

성북세무서장

